

의안번호	제184호
의결 연월일	2015년 6월 18일 (제340회)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출연월일	2015년 6월 18일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6월18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민선6기 추가 조직개편에 따른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
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
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정책복지위원회의 “규제개혁추진단”을 삭제함
(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)
-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“안전행정국”을 “행정국”으로 변경함
(안 제4조제2항제3호가목)
- “재난안전실”을 건설소방위원회로 정함
(안 제4조제2항제5호가목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184호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여성정책관, 규제개혁추진단”을 “여성정책
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안전행정국”을 “행정국”으로 하
며,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“균형건설국”을 “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”으
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여성정책관, 규제개혁추진단, 미래전략기획단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바. (생략)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공보관, 감사관, <u>안전행정국, 문화체육관광국, 자치연수원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· 다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 <p>5. 건설소방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균형건설국, 바이오환경국, 혁신도시관리본부, 소방본부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	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여성정책관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-----<u>행정국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·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<u>재난안전실, 균형건설국</u>----- ----- -----</p>

나. ~ 라. (생 략)

6. (생 략)

③ (생 략)

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

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